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수신 이 * 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지청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귀하의 의견을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실업급여 지급제한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2. 당사자	성 명	이 * 철						
	주 소	(11669)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5*번길 2* (의정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인은 고용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9호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해외(중국)체류 중 대리인을 통해 2014. 11. 24., 2014. 12. 22.자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실업급여 지급제한(지급중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총 반환금액 4,920,000원(부정수급액 2,240,000원, 추가징수액 1,120,000원,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1,560,000원)						
5. 법적 근거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44조, 제61조, 제62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 제80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9조, 제104조, 제105조						
6. 의견제출 안내	제출처	기관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부서명	고용관리과	담당자	손성달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층			전화	031-828-0955	
		e메일주소	-			팩스	0505-130-0062	
	제출기한		2017년 4월 26일(수) 17: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법무부 자료>

성명	생년월일	실업인정 신청일	해외체류국가	출국일자	입국일자
이*철	83. 7. 15.	2014. 11. 24.	중국	2014. 11. 17.	2015. 1. 18.
		2014. 12. 22.			